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51

발의연월일: 2025. 5. 20.

발 의 자:백선희·서왕진·김재원

신장식 · 정춘생 · 강경숙

김준형 · 차규근 · 한창민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 모총장·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 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 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 장·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 관은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추천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의2(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 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대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
	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
	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
	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
	명된 국방부장관은 제19조에 따
	른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추천권 및 임명제청권
	을 행사할 수 없다.
<u><신 설></u>	제20조의2(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
	명된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
	른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
	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부대의 장을 임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